

동작구의회공고 제2019-4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오늘날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불안정, 신체 불균형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난임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난임치료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한 의료 행위를 통한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하여야 하는 바, 우리 구에서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안 제4조)
- 나. 구청장의 한방난임치료 사업(안 제5조)
- 다.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 및 예외(안 제7조)
- 라. 중복지원 및 거짓 등 부정한 방법 적발 시 환수(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법적 부부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